

# 경운대학교 간호·보건 인문학연구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다학제적 연구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보건 의료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, 국내·외 기관과 협력하고 조직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명칭 및 소재)

본 연구소는 경운대학교 간호·보건 인문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### 제3조 (사업)

연구소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간호·보건 인문학융합 분야 연구 및 개발
2. 간호학, 보건학 및 의학 분야 학술세미나, 심포지움 및 연구발표회 개최
3. 간호·보건 인문학융합 분야 관련 정보를 발간하는 학술지 및 자료간행
4. 국내·외 학술교류와 연구 참여
5.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조직 및 구성

### 제4조 (조직)

-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, 교육부, 출판홍보부를 둔다.
- ② 연구부는 간호 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업무 및 연구세미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교육부는 학술세미나, 연수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출판홍보부는 학술지 및 학술세미나 관련 출판업무와 기관 및 단체의 정보교류, 교수 및 연구원 교류, 산학협력, 연구소 소식지 발간 및 홍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### 제5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과 각 부에 부장 1인, 간사를 둔다.
- ②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 부장은 전임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간사는 각 부의 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⑤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, 연구위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 및 조교를 둘 수 있고 자격, 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6조 (임무)

-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장은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-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, 의결사항의 집행점검 등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
- ④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교육, 연구에 전념하며, 외부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
- ⑤ 연구원은 연구과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- ⑥ 연구보조원은 연구소 연구업무를 보조한다.
- ⑦ 조교는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### 제7조 (구성 및 회의)

-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소장과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소장을 포함한 출석위원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.

### 제8조 (심의사항)

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운영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 개정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4장 재 정

제9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보조금,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총당한다.

제10조 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 제5장 보 칙

### 제11조 (규정의 준용)

- ① 연구소의 운영은 본교의 「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 (기타사항)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